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2021. 11. 3.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1. 작성 경위

- 2021. 10. 6. 제267회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공사의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후 사장이 직접 대책을 준비해왔고, 대장동사업에서의 배임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위 대책을 마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 2021. 10. 12. 부터 공사 내 사장을 단장으로 대장동 TFT(법무, 전략사업, 개발사업, 홍보 포함)를 구성하였으며, 사장이 중심에 서서 모든 자료를 직접 수집, 확인하고, 정리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 대장동사업 준공이 금년 12월말로 다가와서 남아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공사의 법적, 행정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장동 TF 실무 직원들도 본 사건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사건의 내역과 대책을 작성하고 이후 사장이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장이 TF 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을 받아 직접 실무 확인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한 것이다.
- 사장이 위 보고서 전체를 직접 타이핑 쳐서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TF 실무직원들이 사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공급하고 오타여부를 체크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이와 동시에 공사 공식 문서로 법무법인 상록에 법적인 자문을 의뢰하여, 법무법인에서 자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공사에서는 사장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11월 1일 대국민 보고서와 자문결과서 두 개로 나타난 것이다.

2. 공사의 접근 방법

- 공사는 첫 단계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내역의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들을 개괄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고, 금번 대국민 보고서와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는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 공사는 다음 단계로 향후 외부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법적 소송 및 행정적 조치에 착수하는 것이다.

3. 최근 몇 가지 언론 주장에 대하여

가) 위 보고서가 ‘사장 개인의 주장 내지 소신’이라는 지적이나 주장에 대하여

- 위 보고서는 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성남시민과 나아가 국민께 보고하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 다른 공공기관에서처럼 실무직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하여 사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통상적인 공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매우 저급한 주장이며, 실제 작성 과정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나) 위 보고서를 윤정수 사장 해임소송과 관련된 법무법인이 대신 작성해줘서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윤정수 사장 해임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상록에서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고, 위 보고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윤정수 사장 본인이 직접 TF실무직원들의 자료 도움 등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법무법인이 대신 작성했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다.
- 법무법인 상록은 대장동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윤정수 사장의 해임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논란의 유무는 보고서 내용과 자문서 내용으로 판단하면 될 뿐이다.

다) 공사가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대장동 TF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당초 성남시는 성남시가 주도하여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시와 공사가 동일한 법인에 각각 계약하고 동일한 목소리로 대응하자고 공사에 권유하였으나, 공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소송의 주체라는 점인데 비해, 성남시는 준공 등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자이자 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무법인 활용 목적이 서로 달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성남시는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외부법률전문가(법무법인)가 참여하는 TF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회의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자료 검토하는 단계이다.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공사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성남시 자체적으로 공식 발표한 산출물은 없는 상태이다.
- 이에 비해 공사는 사장이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작성하는 등 직접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형태로 TF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11. 1. 대국민 보고한 보고서와 법무법인 자문서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적은 성남시와 공사의 접근방법과 대응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는 점을 무시하고 한 쪽의 시각에서 왜곡하는 것이다.
- 물론 공사의 접근방법은 대장동사업의 준공이 임박하는 등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한 비상적인 접근방법이었다.

라) 공사가 성남시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국민보고서를 공개 발표한 이유

- 성남시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사 TF 법률자문단 위촉 전에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대외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보고서의 발표가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위 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어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였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강해 나가면 될 사항이다.

- 공사 TF 법률자문단 위촉의 목적도 법적인 자문을 받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미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서 이를 전제로 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단순히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대외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자문의견의 내용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보고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자문의견도 기본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와 그 뼈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관상 이사회와 주요 의결사항이 될 수 없고, 직제규정상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
- 설령 성남시가 주장하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실기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완벽한 절차와 조직을 잘 만들고 대응방법을 구상하는가에 있지 않음을 밝힌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분과 논란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공사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 공개롭게도 공사에서 위 보고서를 공사에 홈페이지에 공개한지 약 1시간 후 언론 속보를 통해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 민간사업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전반적으로는 공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동 수사과정을 참고하면서 공사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